

## [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]

[시행일 2024.11.12.]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백석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「대학원 학위수여 규정」 제2장 및 제3장에 의거하여 대학원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과 관련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응시자격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외국어시험: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1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
2. 종합시험: 석사과정 12학점 이상, 박사과정 24학점 이상(신학[Ph.D.]전공은 12학점), 석박사통합과정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. 다만, 일반대학원, 기독교전문대학원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

**제3조(외국어시험의 대체·면제)** ① 해당 대학원에서 개설한 외국어 관련 과목 또는 한국어 관련 과목(외국어트랙의 경우)을 이수한 자나 공인된 외국어시험 점수가 본 대학원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게는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②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③ 학위과정 변경 시 기존에 합격한 외국어시험으로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.

**제4조(종합시험의 인정)** 본 대학 대학원 진학 및 학위과정 변경 시,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시험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.

1. 본 대학 대학원 수료자 또는 졸업자가 동일 대학원의 유사전공에 진학 시, 기존에 합격한 종합시험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. 단, 석사과정에서 박사(석박사통합) 과정으로 진학 시에는 공통(기독교세계관)과목을 제외한 종합시험 과목을 인정하지 않는다.
2. 학위과정 변경 시 기존에 합격한 종합시험 과목 중 공통(기독교세계관)과목만 인정한다.

**제5조(응시 절차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응시료를 납부해야 한다. 이 때 응시료는 [별표1]과 같다. 단, 외국어트랙의 응시료는 별도로 정한다.

**제6조(시험일자)** 매 학기 중에 시행하되 시험실시 2주일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대학원의 형편에 의해 시험 공고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시험과목)** 본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 외국어시험: 외국어시험의 과목은 영어 또는 한국어(외국어트랙의 경우)로 한다. 다만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외국어를 시험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종합시험: 종합시험의 과목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대학원장의 요구에 의해 과목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.
  1. 일반대학원: 석사 2과목, 박사 3과목
  2. 기독교전문대학원: 석사 2과목, 박사 3과목(Th.D. in Min. 2과목), 석박사통합과정 3과목 이상으로

하며, 공통과목 1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.

3. 신학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: 석사 2과목

**제8조(출제위원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해당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
**제9조(출제범위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어시험: 각 전공 분야의 적절한 연구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2. 종합시험: 전공영역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**제10조(채점위원)** 채점위원은 그 해당 과목의 출제위원이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원장의 허락을 얻어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1조(배점 및 합격기준)** ①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,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

② 종합시험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,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**제12조(결과보고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채점위원은 그 결과를 시험시행일 2주 이내에 대학원교학처에 제출해야 하며, 대학원교학처는 이를 취합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재응시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.

**제14조(시험경비)**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, 감독비 등은 [별표1], [별표2]와 같이 책정하여 지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부칙

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1]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응시료

## 1.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응시료

(단위: 원)

| 구분    | 대학원      | 과정                  | 응시료<br>(과목당)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외국어시험 | 일반·기독교전문 | 석사,<br>박사,<br>석박사통합 | 15,000       |    |
| 종합시험  | 전 대학원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
## [별표2]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경비 지급액

## 1.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경비 지급액

(단위: 원)

| 구분    | 대학원          | 과정                  | 출제비<br>(과목당) | 채점비               | 감독비·<br>진행비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외국어시험 | 일반·<br>기독교전문 | 석사,<br>박사,<br>석박사통합 | 15,000       | (1~2명)<br>15,000  | (50분당)<br>30,000 | ※ 종합시험 감독<br>및 진행위원은 교<br>통비(20,000원)를<br>추가 지급 함 |
| 종합시험  | 전 대학원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(3명~)<br>n명×6,000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감독비·진행비·교통비는 해당 시험을 야간 또는 주말에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 함.